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법 학 과

박 정 환

법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혁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법 학 과

박 정 환

박정환의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26일



위 원 장 법학박사 지 규 철

위 원 법학박사 김 혁

위 원 법학박사 박 중 원



목 차

【표 목차】	iv
【국문요약】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정보권	5
제1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5
I. 범죄피해자의 의의	5
II. 범죄피해자 권리의 근거와 성격	6
1. 헌법	6
2. 형사소송법	10
3. 범죄피해자 보호법	19
4.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의 문제점 및 시사점	26
제2절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27
I. 정보권의 성격	27
II. 정보권의 유형	29
1. 정보제공 목적에 따른 유형	29
2. 정보제공의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따른 유형	30
3. 정보제공의 신속성 여부에 따른 유형	32
제3장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34
제1절 경찰 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제도	34
제2절 검찰 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제도	36
제3절 법원 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제도	39
제4절 범죄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문제의 실태	40
I.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문제	41

II. 사건의 통지 문제	43
III. 사건의 피해자 배제문제	44
제4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에 대한 검토	46
제1절 국제규범	46
I. UN의 피해자선언	46
1. UN의 ‘피해자선언’의 배경	46
2. UN의 ‘피해자선언’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47
II. EU의 기본결정과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48
1. EU의 ‘기본결정’과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의 배경	49
2. ‘기본결정’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51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52
III. 소결	54
제2절 외국의 피해자 권리 및 정보권	55
I. 미국	55
II. 영국	61
III. 독일	65
IV. 프랑스	68
V. 일본	73
VI. 소결	75
제5장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77
제1절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77
I.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범위 확대	77
II. 사건의 ‘알 권리’ 고지 의무화	82
III. 수사상황의 충분한 설명	84
제2절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통한 진술권 행사	86
I. 수사초기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86
II. 구속심사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87
III. 재판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88
IV. 소결	89

제3절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	89
I. 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	90
II.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91
제4절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 개선	93
 제6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6



【표 목차】

<표 1> 정보제공 목적에 따른 정보 유형과 그 내용	30
<표 2>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따른 정보 유형과 그 내용	32
<표 3> 정보제공의 시기 완급에 따른 유형과 그 내용	33
<표 4>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80
<표 5>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85
<표 6> 한국형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안	92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 정 환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실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권리 보호 법령 및 정책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권리 가운데 '정보권'은 범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정보권'은 다양한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권리(가령 진술권, 참여권 등)를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현행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이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기 어려운 원인은 ①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② 사건의 통지, ③ 사건의 피해자 배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범위의 확대, ② 사건의 '알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화, ③ 검사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을 제안하였다. 「권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증인신문과 범죄피해자 진술은 별도의 절차로 분리, ②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 관련 지침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의 신설, ② 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정보권 보장 관련 강좌 개설 및 정보권 교육 전문가 양성, ② 재판절차 및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인식 개선, ③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 정보권, 정보제공, 정보권 보장, 헌법, 형사소송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의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의 존재도 불가피하다.¹⁾ 그러나 현행 형사정책은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 제도에 편중된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수단이나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왔다. 즉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 과정에서는 중심적 존재가 아닌 ‘주변적 존재’에 불과 한 것이다.²⁾

그리고 다양한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시행하지 못한다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법에서 범죄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가해자에게는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라는 명분 아래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된다.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소외된 제삼자가 되어 버리는³⁾ 지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구체적이면서 실제로 나타내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요청은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범죄피해자가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로 제대로 존중받는 것이다.⁴⁾ 이러한 처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자신이 주체가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권을 충분하게 보장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 없는 범죄도 존재하는데,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의 경우는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있다.

2)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 21권 제1호, 2013, 188면.

3) 김택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1, 1면.

4) Stephen Schafer, “The Victim and His Criminal: A Study in Functional Responsibi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8;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9, 48-49면.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⁵⁾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의 자료 또한 방대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의 개념, 유형, 권리 보호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내외 사례 소개, 국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 법령 및 정책의 문제점,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도,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는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2차 피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정보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보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지속해서 제론 되는 난제와 그에 따른 보완책을 거듭 강조하는 방식으로 연구⁶⁾가 이루어져 한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은 범죄피해자 권리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권리(가령, 적극적 진술 기회, 재판의 주체로서 참관 기회 제공 등)들의 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 및 정보권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입법·개정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그간 형사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선방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5) 김 혁,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 김 혁,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박호현·김중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호, 2018. 등.
- 6)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2017. 등.

연구의 범위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시작한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논의의 길잡이로서 범죄 피해자에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정보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을 검토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권리 가운데 정보권에 관한 의미를 소개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밝힌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 가운데 정보권이 왜 중요하며 학술적으로도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환기한다.

제3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제공의 국내 법령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수사·재판·형집행단계의 정보권 보장제도를 검토하고, 정보권에 관한 문제의 실태를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사건의 통지, 피해자 배제문제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에 대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외 입법사례와 정책에 대하여 대륙법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독일, 프랑스와 영미법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함께 비교·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 실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진술권 행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2장, 3장, 4장에서 살펴보았던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해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인식변화가 없다면, 완전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및 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언급했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 의의를 밝히고, 후속 과제 등을 언급하면서 연구를 맺는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첫째,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정보권 보장)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삼을 수 있는 주제어인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 ‘정보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학술지 연구 54개⁷⁾, 학위논문 27개⁸⁾, 정책연구보고서 6개⁹⁾,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자료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도출된 자료들이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최종 분석 대상 자료를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 자료는 국내 학술지 연구 43개, 학위논문 11개, 정책연구보고서 6개, 국외 문헌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자료이다. 둘째, 본 연구의 범위에 따라 연구 자료의 매칭 작업과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의 매칭 작업 후에는 최종 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삭제, 변환, 추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7) 김잔디, “범죄피해자 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1;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김 혁,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보호관찰 제17권 제1호, 2017; 김 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2020; 노상욱·박종렬,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제7권 제4호, 2016;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외 39개 학술논문.
- 8) 서명희,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김길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대학원, 2017; 백영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9. 외 4개 학위논문.
- 9) 이승현·박성훈,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외 5개 연구보고서.

제2장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정보권

제1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I. 범죄피해자의 의의

피해란 “각국의 실정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나 본의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 및 법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를 제외하고,¹⁰⁾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것이다.

“피해자”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피해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¹¹⁾ 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의 직접 피해자로 제한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를 받은 범죄도 개인적 법익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¹²⁾가 있다.

범죄피해자(Crime Victim)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을 의미하며 개인,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통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헌법 제27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일반법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기본이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국가정책의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김재민, “경찰의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13면).

11)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동향 연구보고서, 2004, 14면.

12) 오늘날 “피해자”의 정의는 다양한 견해에 의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해석 또한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¹³⁾에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에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같은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 시키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 방지와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간접적인 피해자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직접 받은 자를 일컫는데,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해자·범죄자로부터 직접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받기 때문에 힘든 고통의 경험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를 범죄피해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⁵⁾

그러나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직·간접적인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논의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기 어려우므로, 범죄피해자를 일반적인 개념의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범죄피해자 권리의 근거와 성격

1. 헌법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주제이며, 국제연합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선언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14)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15) 최영인·염건령,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백산출판사, 2005, 18면.

이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⁶⁾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규정을 보장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헌법에 규정된 생명권과 재산권, 공판정 진술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과 같은 범죄피해자 관련 기본권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과 피해자 보호 정책 역시 이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¹⁹⁾ 따라서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범죄피해자는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 생활에 치명적 피해를 보게 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⁰⁾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이란 개념은 상대적·주관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통상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풍족한 개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전반에 관한 총론적 규정으로서 제10조 제1문 전단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민이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의무이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개별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국가는 범죄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16)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2009, 84면.

17) 헌법 제10조.

18) 박미숙, “헌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2, 167면.

1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320면.

20)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41면.

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추구권’ 조항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생활의 자유’가 사생활의 설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한다면,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전혀 사사로운 ‘나만의 영역’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²¹⁾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범죄피해 사실, 피해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공개하는 것과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로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²²⁾ 특히 범죄피해의 사실이 미리 보도된다면 그로 인해 범죄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로 인하여 크나큰 심적 고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생활권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도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에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규정이며, 형사절차 전

21)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법연구 제1권 제1호, 2015, 20면.

22)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48면.

반에서 가지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중 대표적 근거 규정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²³⁾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것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범죄피해자를 단순히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언 등 증거방법이나 심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능동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여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주된 취지는 검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소추권을 독점시키고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범죄피해자가 당해 피고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에 있다. 더불어 법관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토록 함으로써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국가의 구조대상인지 사실 여부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사건의 유·무죄의 판단과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재정적인 구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타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피해를 본 국민과 그의 유족이 가해자인 범인으로부터 피해회복에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거나 일정한 보상²⁴⁾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으로 설명

23)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39면.

24) 보상이란, 공적 보상과 사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 보상은 국가의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의 손실보상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기본적으로 공법상의 손실보상 외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형사보상·재해보상 및 산업 보호 정책상의 보상 등이 포함된다.

되고 있다.²⁵⁾ 그 이론적 근거는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책임 측면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찾는다. 달리 말해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하여 사회의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국가가 위와 같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홀히 해서 생긴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²⁶⁾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보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함께 그동안 형사사법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범죄피해자가 이제는 참고인이나 방관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30조 규정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헌법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범죄자에 대하여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에 있어 참여하고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피해자는

2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586면.

2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인정한 이유는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선고 내용은 이론적으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한 선고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소외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범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검찰, 수사기관, 피고인(피의자)은 수사절차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범죄와 관련된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지위보다는 참고인의 지위로 한정되어 있다²⁷⁾.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어 두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고소 및 취소

‘고소(Strafantrag, complaint)’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제223조).²⁸⁾ 그리고 범죄자를 고소하는 행위는 범죄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고소’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고소권자가 되며, 가장 중요한 수사단서이자 수사 개시 요건이 된다. 나아가 친고죄에 있어서 소송조건²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이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에 대한 희망표시 여부는 소추 절차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 피해자는 일종의 처분 권한을 가진다.³⁰⁾ 그러나 이러한 범죄

27) 전지연,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3, 41면.

28)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29) 소송조건이란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심판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즉 범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구비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공소 제기의 유효조건 또는 소송의 존속발전 조건이라고도 하나, 표현의 차이뿐이고 결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소송조건은 실체법상의 처벌조건,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조건 및 절차 정지의 조건(형사소송법 298조) 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30) 국가가 형벌권의 발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종속시켜도 괜찮을 만큼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즉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권을 인정한 것이다(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2008, 127면).

피해자의 처분 권한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고소장 선별 수리제도’³¹⁾나 경찰의 ‘일차적 수사 종결권’³²⁾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정식수사가 아닌 내사절차를 거쳐 사건의 종결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고소는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36조).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동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고(동법 제238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57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에게 고소의 취소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되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약식수사의 처분 또는 형의 감경 등 참작 사유가 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사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수사상 매우 중요한 단서이며,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종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대응 즉, 고소 여부 따라 형사절차의 방향과 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리의 행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할 것이다.³³⁾

31) 2003년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66호)’ 개정으로 검찰에 도입된 제도로서 고소장 접수 전에 검사가 피해자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고소의 실질심사를 한 후, 신고된 사실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때 수사에 관여할 필요 없이 고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 사실의 유무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김재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1, 270면).

32) 경찰에게 부여한 일차적 수사 종결권은 수사의 전(前)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사에 관해서도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건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김 혁,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74면).

33) 이만중,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나.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및 통지³⁴⁾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및 그 처분결과에 대하여 가해자 못지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권 및 통지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기본권인 정보권을 개별 법률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³⁵⁾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정보제공 및 통지제도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58조,³⁶⁾ 제259조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처분결과, 공판 개시, 재판 결과, 구금상황·보호관찰 집행상황, 출소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259조의2에서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통지의 시기가 수사중·후반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사초기단계의 통지 규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2004, 62면.

34) 최근에는 형사사법포털(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KICS))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다.

35) 전지연,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42-43면.

36)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 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증인 또는 피해자 신문절차에서 진술하려면 미리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수사나 공판정에서 진술한 이후에는 자신의 진술 취지가 조서 등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죄피해자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배우자·형제자매·직계 친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은 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94조의4 제2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94조의4 제3항)고 규정하였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제한을 두지 않고 인정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의 저해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서조항’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제도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소송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 등의 진술권 및 진술의 비공개

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³⁷⁾

37)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5항 피해자 진술권 규정의 목적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여 적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후반부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당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동법 제2항)하면서도 범죄피해자가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동법 제1항 제2호),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체될 경우(동법 제1항 제3호)가 있을 때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보장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즉 피해자 이외에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형 제·자매·직계친족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1항).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권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진술을 별도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증인신문과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분리하여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규정을 제정하였다. 재판공

절하고 평등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개라는 헌법적 원리와 이에 대립하는 피해자 보호라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되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마. 신뢰관계자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신문에 응해야 할 피해자 또는 증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할 수 없거나 새로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관계전문가나 진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법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³⁸⁾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또한, 범죄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163조의2 제2항).

위 규정은 본래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었던 제도였으나³⁹⁾ 형사소송법 개정(2007. 6. 1.)으로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의 피해자로까지 확장되었다. 다만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규칙에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38) 김용세·윤민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143면.

39)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규정 및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의 제3항과 유사한 규정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옴부즈맨과 후견인제도(Ombudsmen and Support Attendants)도 이와 유사하다, 신뢰관계자의 동석과 같은 증인보좌인 제도는 1988년 8월 ‘특정범죄자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용에 있어 특정범죄에 한정된다는 점과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제재시스템 개혁”, 『한국 형사 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정암 정성진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2010, 362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규정을 정하게 된 것은 일반적 범죄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증인신문 등의 경우에 피해자의 나이, 심신 상태의 안정을 고려하여 불안감이나 긴장감으로 이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녹화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진술의 반복적 청취로 인한 제2차 피해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성폭력 범죄피해자만 인정되었던 녹화제도를 ‘수사 과정 기록제도’⁴¹⁾와 함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도입하여 일반화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심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피해자도 피고인의 앞에서 증언할 경우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심리적 고통이 압박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피고인과 분리하는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디오 녹화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도입하였다.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이 허락되는 경우로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

40) 제84조의3(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5. 29.>. ② 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41) 형사소송법 244조의2(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동법 244조의4(수사 과정의 기록).

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죄⁴²⁾의 피해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⁴³⁾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③ 그밖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경우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의 나이,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사.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야 하고,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42)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 영업행위 등).

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찰의 불기소처분 경우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동법 제258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어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59조), 고소 또는 고발인을 제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한다.”(동법 제259조의2)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⁴⁴⁾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45조의9).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복절차로 경찰 수사의 통제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여지도록 하였다⁴⁵⁾.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한 자 포함)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재정신청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였다(동법 제260조).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검찰권 통제를 위한 제도의 측면도 있는 것이다.⁴⁶⁾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44) 형사소송법 제245조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2022. 5. 9. 개정됨(시행일 2022. 9. 10.).

45) 김 혁,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73면.

46) 일반적으로는 재정신청제도를 검찰권 통제 수단으로 주로 언급했으나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수사와 기소를 청구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재판 절차개시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김봉수,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2008, 280면).

기본 정책 등의 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형사사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동법 제2조 제1항)와 사생활의 평온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동법 제2조 제2항), 그리고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형사사법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권리(동법 제2조 제3항),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동법 제14조)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를 통해서는 헌법의 기본 권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2조 제3항은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 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3항).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원받을 수 있다(동법 제7조 제4항).

정보제공 및 참여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8조).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0조).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반영하기 위한 하위 법률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구조금의 종류,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⁴⁷⁾

가. 형사절차 참여 보장과 정보제공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고, 범죄피해자가 요청한 때에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 등의 형사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⁴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 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2항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등 형사절차 관

47)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24-25면.

48)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런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는 예규로 범죄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공판 개시 통보 외에 사건의 처분결과와 재판 결과 및 재판기일, 출소 사실 등 형사재판 및 집행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해당 재판 절차 참여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⁴⁹⁾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과 정보제공의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구조금 지급요건, 구조금 종류, 유족의 범위와 순위, 구조금액, 구조금의 지급신청,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명예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9조 제2항). 이는 지금까지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증언 관련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관한 제도를 일반 제도로 편입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위에서 본 헌법의 사생활 평온함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특정범죄⁵⁰⁾의 경우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해

49)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50) ‘특정범죄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

당 법률의 개별조항에서 부수적으로 규정 해오다가 이를 일반화하였다. 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동법 제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공개 금지(동법 제7조, 제8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게 소환장 송달 및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동법 제11조), 신변안전조치(동법 제13조)를 각각 규정하여 특정범죄의 신고로 인한 신고자의 신변안전보장과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 손실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게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⁵¹⁾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돕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전문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운용상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협조하고 조치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강력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스마일센터⁵²⁾라는 전문심리기관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된 스마일센터로는 서울 동부, 서울 서부, 수원, 인천, 부산, 전주, 대구, 대전, 춘천, 광주, 의정부, 청

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각 죄가 그것이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호).

5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복구 지원 등).

52)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법무부, 스마일센터, 설립 배경 및 현황).

주, 울산 등이 있고, 의료기관에 위탁한 곳은 부산이며 나머지는 범죄피해자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제3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였던 것에서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⁵³⁾ 한계 또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한계는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이 있었느냐 여부이다. 그리고 아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례 등을 제정하더라도 대부분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일부 특정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 등에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⁵⁴⁾

라.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의 직접당사자인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중립적인 조정자(조정위원)에 의해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서로 대화하며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과와 보상에 관한 합의 등 실질적인

53) 박상식·이창호,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52면.

54) 대전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였다.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조정제도는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피해회복 장치라는 점에서 공판절차에서 이용되는 ‘배상명령제도’나 민사절차상 ‘화해 및 중재 제도’와 구별된다. 형사조정제도의 목적은 회복적 사법을 이론적 근거로 분쟁 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함은 물론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가해자·피의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가해자·피의자에게도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양 당사자 간에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 향후 타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재범률 감소와 재사회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⁵⁵⁾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 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41조 제1항), 형사조정에 회부 할 수 있는 형사사건 대상은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 범죄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침해, 임금채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형사조정에 회부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이다(동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의 대상 사건이 주로 고소사건으로 규정(동법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된 것은 한국이 외국에 반해 고소가 많다는 점과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의 상당수가 형사고소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⁵⁶⁾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다만,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하되, 형사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45조 제4항). 실무적으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는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55) 김재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262면.

56) 강성구·박광민·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07면.

생각하는 때에는 수사를 진행하되 형사조정결과를 고려하여 처벌 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제22조 제1항). 결국,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피의자에게는 형의 감경, 범죄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의 효과가 발생하고 검사에게도 불기소처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조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소송제도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알 권리 충족, 법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달리 말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보장되며, 이들의 법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높은 제도이다. 따라서 실제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의 문제점 및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러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법 조항에서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변호사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그리고 ‘다만, (중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 조항의 실제 취지를 적용하는데 한계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각 해당 조항에는 조항의 대상, 내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및 담당자의 인식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자에 따라 법 규정을 해석하는 방향이 다

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개입이나 판단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을 통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2절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I. 정보권의 성격

범죄피해자 정보권이란 범죄피해를 본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회복, 신체적 안전 확보 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받거나 자신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정보권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보장,⁵⁷⁾ 제21조 알 권리보장, 제27조 제5항 재판 참여 진술권리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⁵⁸⁾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는 다양한 범죄피해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범죄피해자에게서 정보제공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형사절차의 참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며, 스스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부여된 소극적 지위 행사인 효율적 방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지위의 출발이 된다.

다양한 범죄피해자의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권에 대한 근거 규정의 정립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57) 도중진, “일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71호, 2002, 42-43면.

58)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136면.

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로 확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5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⁵⁹⁾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동법 제8조)⁶⁰⁾의 근거를 부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2007년에 「형사소송법」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후 2014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⁶¹⁾을 통해 동법 제8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조항이 추가되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정보권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및 범죄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범죄피해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범죄에 대한 구체적·추상적 불안감 경감, 재 피해 방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손해 회복, 형사절차 감시 등의 측면에서 정보권은 의의가 있다.⁶²⁾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형사절차를 들여다보면,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보권의 불평등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보권의 내용 중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관련하여 다루어질 수도 있으며, 별도의 권리로 보장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다.⁶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의

59)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7731호, 2005. 12. 23. 제정)

60)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2779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법령)

62) 太田澁也, 『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1163號, 有斐閣, 1999, 19面;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2, 198-207면.

미를 ‘범죄피해자가 관계기관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받고 제공할 수 있는 권리’로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정보권의 유형

범죄피해자가 갖는 정보권의 유형은 첫째,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이 어떤 목적으로 행하여지느냐에 따른 유형, 둘째, 제공되는 정보가 범죄피해자와 구체적으로 관계가 있는 정보인가 그 여부에 따른 유형, 셋째,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의 제공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며 시급함의 여부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목적에 따른 유형

범죄피해자 정보권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⁶⁴⁾ ①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② 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③ 범죄피해자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④ 재피해 방지, ⑤ 범죄로 인한 재산적 손해회복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의 정보권은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보고 있고, ②의 정보권은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익의 논리에 근거가 있다. ③의 정보권은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충격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 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④의 정보권은 범죄피해자의 생명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⑤의 정보권은 재산적 손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절차과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제공 목적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고지·통지되는 정

63) 범죄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진술권’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법정 진술권’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있다.

64)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2015, 380-381면.

보들을 예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정보제공 목적에 따른 정보 유형과 그 내용⁶⁵⁾

정보제공의 목적 유형	정보제공 내용의 예시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형사절차 관련 기록 열람·등사
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수사진행 중간통지
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권 범죄피해자 지원제도(해바라기 센터 등)
재 피해의 방지	신변안전조치 신청권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권
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	배상명령 신청권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

2. 정보제공의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따른 유형

정보제공의 사건 관련성에 따른 구체적인 유형은 2008년 「UN피해자지원협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하는 사건과 결부되어 수사 진행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 유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즉,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 및 수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정보(general information)’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정정보(specific information)’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⁶⁶⁾ 일반정보는 수사의 진행 혹은 공판 진행절차 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제공하여 줄 필요가 있다. 반면 특정정보는 범죄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공판절차 과정에서 제

65)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381면」에서 제시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유형을 수정·보완하였다.

66) 특별정보는 개별정보라고 부르기도 한다(황순평,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의 피해자통지제도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7호), 2008, 31면).

반 되는 절차적 권리 및 실체적 피해회복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로 구분 지어, 형사절차 진행 중에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의 단계마다 일반정보와 특정정보를 구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⁷⁾ 한국의 경우 일반정보는 형사절차의 개요,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나 지위, 지원 및 보호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해당한다. 특정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피의자의 신병 및 증거에 관한 사항, 수사 진행 상황,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등이 해당된다.⁶⁸⁾

일반정보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특정정보는 특정사건의 가해자·피의자·피고인 또는 사건관계자의 예민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구체적 사안별로 정보제공 범위와 한계를 따져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존재한다. 즉, 특정정보는 일반정보와 달리 적절하고 원활한 수사 활동의 수행, 가해자 등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가해자의 교화·개선과 사회 복귀의 촉진 등 다른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⁶⁹⁾ 한편, 2010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⁷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서는 범죄피해자

67) Eduardo Vetere & Pedro David(Eds.),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Festschrift in honourofIreneMellup, 2005.

68) 太田澁也, 『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1163號, 有斐閣, 1999, 20面; 한영선, “정의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UN협약’ 초안: 회복적 사법 조항과 관련하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

69) 황순평,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의 피해자통지제도를 중심으로”, 33면.

70)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 12. 29.>. 제4항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 1. 5.>.

를 사건당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제공 및 통지와 관련해서 통지의 내용·주체·제한 사유 등이 조금의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영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래 <표 2>는 일반정보와 특정정보를 분류한 것이다.

<표 2>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따른 정보 유형과 그 내용⁷¹⁾

정보 유형	정보제공 내용의 예시	정보제공의 제한
일반정보	· 검찰에 항고 및 재정신청권 ·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 ·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동석권 ·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 · 배상명령 신청권	제한 없음
특정정보	· 수사 진행상황 · 피해사건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 피의자·피고인 석방·보석사실 · 수형자 석방·가석방사실	수사·공판의 원활한 진행 및 상대방 인권보호 고려, 제한가능

3. 정보제공의 신속성 여부에 따른 유형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통상적 절차에 의해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의 신속성 여부에 따라서도 일반정보와 특정정보로 나뉜다. 예를 들면 범죄의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구금 및 석방 등에 관한 사실에 있어 정보제공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살인·강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자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자들의 구금

71)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382면.

및 석방 여부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이러한 특정정보의 경우에는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일반적 형사절차에 대한 개요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과 같은 비록 일반정보라고 할지라도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범죄 발생 초기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접촉·보호하는 때이다. 현장성이 강한 범죄의 경우 범죄 발생 초기에 형사사건의 절차 및 범죄피해자가 보장받을 일반적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피해회복의 촉진과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기타 현장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범죄, 경찰청의 민원실에 진정·탄원·고소를 하여 담당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또한, 특정정보라 할지라도 현장성이 모자라거나 범죄피해자의 신체·생명의 안전 등과 직접 연결되는 않는 형사절차 등의 진행에 관해서는 상황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보를 고지해 주면 된다. 물론 이때도 범죄피해자의 정보권과 가해자·피의자·피고인 등의 사건관계자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기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제공에 대한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제공의 시기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주목하려고 한다. 만약 정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정보제공의 시기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보제공의 유형은 신속성의 필요 여부 및 구체적 사건의 정보제공 최적 시기와 관련지어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분류된다.

<표 3> 정보제공의 시기 완급에 따른 유형과 그 내용⁷²⁾

정보 유형		정보제공 내용의 예시	정보제공 시기
신속한 정보 제공	일반 정보	·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기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사항	사건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접촉 시
	특정 정보	· 피의자·피고인의 석방 사실 · 수형자의 석방·가석방사실	· 상황발생 시 · 상황변동 시

제3장 범죄피해자 정보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련한 사건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도 행정규칙의 제정⁷³⁾ 등을 통해 사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내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형사절차상의 순서대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경찰 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제도

경찰의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규정은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 305호, 2022. 1. 4. 일부개정)에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는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제11조)해야 하고,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 4. 15. 부칙개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569호, 2020. 9. 25. 일부개정)에서도 경찰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고소·고발·진정 기타 수사 등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등의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는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통지의 방법으로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SMS) 등 사건을

72)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383면.

73)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은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접수할 때 범죄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있다(동 규칙 제11조 제2항). 다만, 고소인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범죄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범죄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동 규칙 제11조 제4항). 그러나 실무에서는 휴대전화로 형사사법포털(KICS)과 연동하여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⁴⁾

사건 통지의 시기에 대해서는 신고·고소·고발·진정 등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날,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동 규칙 제11조 제1항 1호, 2호).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관 또는 담당자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⁷⁵⁾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나이는 14세 이상 형사성년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본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촉법소년 행위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⁷⁶⁾ 따라서 촉법소년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정보 접근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⁷⁷⁾ 다만 범죄행위자가 소년일 때에는 범죄피해자와 소년의 보호자가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법의 신상에 대한 정보 대신 보호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찰실무 단계에서 수사상황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와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⁸⁾

74) 범죄피해자 본인은 KICS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사건조회를 할 수도 있다.

75)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76) KICS를 통한 통지 역시 동일하다.

77)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226-227면.

78)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227면.

종합하면, 형사 수사에서 가장 첫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은 가해자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 이른바, 인권 보호’와 충돌되어,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범죄피해자, 가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모두 인권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제한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정보권이 최대한 보장 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수사기관 첫 번째 기관에서부터 정보권 보장이 막혀버리는 지금의 상황은 국내 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더욱 한계점이 된다. 검찰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기존에 주어진 정보만 참고하여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2절 검찰 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제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이후 관련된 사건의 정보제공은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의 정보제공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59조의2). 그리고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한때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동법 제258조 제1항)과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다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9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1250호, 2021. 12. 3. 개정)은 각 검찰이 범죄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 담당관을 지정하고 법률지원 등에 대한 상담과 구조금 및 배상에 관한 신청 등의 구조제도, 재판절차 참여 등 형사절차 안내,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신변 보호 안내, 형사절차 진행 정보 통지, 형사조정제도,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신변 보호 및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1183호)⁷⁹⁾에서는 검사의 기소 전·후에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지침하고 있다. 「인권 보호 수사규칙」(법무부 훈령 제1010호)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동 규칙 제50조), 범죄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제5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14413호)에서도 피고인 등과 관련한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동법 제15조)를 통해 검찰에서의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1250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는 각 검찰청장이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 또는 검찰 행정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범죄피해자지원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전담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전담검사의 업무 보좌, 범죄피해자 상담,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보고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검사나 범죄피해자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상담, 구조금 및 배상 신청 등 구조제도 안내, 재판절차 참여 등 형사절차 안내,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신변 보호 안내, 형사절차 진행정보 통지, 형사조정제도 안내, 관계기관 안내 등의 보호·지원 조치하며, 형사사법포털(KI

79) < 대검예규 제1183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3조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3조의2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제3조의3 【진정·내사·시정·수사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3조의4 【불송치 송부·수사 중지 기록 열람·등사】

제4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 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등사】

① 피해자 또는 참고인은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제1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CS)에 정보를 입력해서 범죄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직권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진술 내용 및 제출 자료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상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 중인 검사실 또는 공판 검사실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14413호)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⁸⁰⁾을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또한, 피고인 등에 관한 주요 변동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의 통보(동법 제4호), 범죄피해자 보호 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의 고지(동법 제5호) 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각각의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검찰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및 통지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 보호 수사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법적 근거를 통해 정보제공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사초기단계인 ‘경찰’에서의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종 법률이나 예규, 규칙을 살펴보면 ‘경찰’보다는 ‘검찰’에서의 정보제공 내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그만큼 상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입력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의 정보제공 현황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형사사법포털(KI

80)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와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CS)에 입력된 정보로 정보제공이 일반적이다. 검찰의 정보제공 법적 근거를 유심히 살펴보면 ‘검사의 판단’이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실제에 적용한다면, 검찰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를 대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또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검사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실질적 사건의 주체인 범죄피해자를 참고인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은 최후 단계인 ‘법원의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3절 법원 단계에서의 정보권 보장제도

검찰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례법에서 재판기일이나 보호처분 결정 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통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소송촉진법)⁸¹⁾에서 법원은 배상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동법 제29조 제1항),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5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⁸²⁾에서 판사는 심리기일을 보조인과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30조 제2항), 심리기일의 변경을 범죄피해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31조). 판사는 처분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7조 제3항). 그리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 등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40조 제4항),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8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0호, 2021. 7. 20. 일부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1&lsiSeq=234019#0000>).

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1&lsiSeq=234019#0000>).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5조 제3항).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면 법원의 집행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은 좀 더 다양하고 구체화 된 내용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형사절차상의 권리행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그러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리고 제공된 정보도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실제 범죄피해자가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사례가 있다.

법원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현재 법원이 주체가 되어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도 보장받지 못한 정보권을 최소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의 최종단계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즉, 정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법원은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⁸³⁾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제4절 범죄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문제의 실태

그동안 범죄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범죄피해자 정보권과 관련된 여러 쟁점 가운데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83) 가령,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었을 경우 불복심사를 할 수 있다.

크게 범죄사건 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문제, 범죄사건의 통지 문제, 범죄사건의 피해자 배제문제로 구분된다.

I.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문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범죄사건 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이념은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소송기록’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피의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⁸⁴⁾ 및 266조의4 제1항⁸⁵⁾의 규정으로 인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그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피의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은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판절차가 종결되면

84) 제266조의3(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85)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기록은 공소를 제기하였던 검찰청에서 다시 보관되게 되는데,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면 범죄피해자가 제출하거나 관련된 자료만을 열람·등사를 하여 줄 뿐이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기록 및 신문조서 등의 소송기록은 열람·등사를 허가하여 주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⁸⁶⁾

범죄피해자나 피의자 등은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 사실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그에 적합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⁸⁷⁾ 그러나 국내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경찰이나 검찰 실무에서는 형사소송에서 범죄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경우 고소장을 경찰·검찰에 접수하면 고소인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두 차례의 추가조사 정도로 수사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는 고소장을 접수한 때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불기소통지가 송부되기도 한다.⁸⁸⁾ 수사초기단계부터 종결 단계에 이르러 범죄피해자에게는 ‘수사절차’에 대한 통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는 언제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았는지, 가해자 또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증거자료들은 무엇을 제출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사의 종결과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검사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 후에야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도 상세하지 않고 이때도 기록의 열람·등사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그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정확한 정보 없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게 된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을 통하여 다시 불복해 보기도 하지만 한 번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그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⁸⁹⁾ 범죄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정보권이 보장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86)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158면.

87) 양경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 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 140면.

88) 양경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141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변호사조차도 범죄피해자에게 자신의 정보권에 대한 권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루어 보면, 형사소송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명백히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는 한계가 존재하는바,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II. 사건의 통지 문제

범죄피해자에게 있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범죄피해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라면 범죄피해자는 이차적 피해를 볼 가능성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의 통지)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의 정보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259조의 2의 조항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보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⁹⁰⁾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정보권)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가 필요할 때,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피해자의 권익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

89) 양경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141면.

90) 200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정보권을 신설하기 이전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규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수사 종결 시에 고소인 등에게 행하는 각종 수사 종결처분 등의 고지(제258조 제1항), 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행하는 공소 불 제기의 이유에 관한 고지(제259조) 등도 범죄피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59조의2에서 보는 것처럼 독립적인 정보제공 규정을 두고서 그 정보제공 범위를 형사절차 전반에까지 확장한 것은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진보라고 할 수 있겠다(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387면).

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제8조의2)과 같은 규정에도 서로 정합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소 또는 고발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만 공소 불 제기 이유를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 등에의 공소 불 제기 이유고지)의 규정도 범죄사건 통지 문제가 제기된다.⁹¹⁾ 미루어 보면, 형사소송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통지는 법적 근거가 명백히 있긴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청’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 또는 변호사가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지’ 권리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안내받은 정보가 없기에 피해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III. 사건의 피해자 배제문제

범죄사건의 범죄피해자 배제문제는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더욱 개선의 여지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검찰이나 법원에 자신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 하여도 적절한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검찰에 게만 범죄인에 대한 기소 결정의 권한이 있는 기소독점주의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찰·검찰은 범죄피해자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거나 반영하려 하지 않고,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범죄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아 많은 범죄피해자가 좌절하게 된다.⁹²⁾ 따라서 범죄피해자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으며 배제된다.

이러한 범죄사건의 피해자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단(4장)에서 설명할 국외(독일 등)에서는 사인소추 제도나 소송참가제도, 부대사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사인소추 제도 등의 제도를 도

91)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387면.

92)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151면.

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마련되는 것이 우선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정보제공

제1절 국제규범

범죄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국제규범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UN의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UN Declaration)」(이하 ‘UN 피해자선언’)과 EU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Framework Decision’ 또는 ‘FD)」 및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피해자 보호 지침(Victim’s Directive’ 또는 ‘VD)」을 통해 알 수 있다.

I. UN의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UN Declaration)」

1. UN의 ‘Declaration’의 배경

UN의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⁹³⁾은 1985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UN 범죄방지회의(제7회)가 개최되어 UN 범죄 의회에 의하여 구체화하였다. 1985년 11월에 UN 총회의에서 UN 피해자선언이 채택되었고,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범죄피해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UN 피해자선언의 주된 내용은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UN 회원국은 범죄피해자가 피해 상황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속·공정·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범죄사건의 진행절차 및 처리 과정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법적 절차는 전반에 걸쳐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93)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https://www.ohchr.org> 유엔공식웹사이트)<2022. 06. 11.검색>.

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여 범죄피해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위협과 보복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하여 조정, 중재, 기타 관습법적 절차 등 관행에 의한 비공식적인 분쟁 해결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⁹⁴⁾ 가해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되었던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어려워지면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하고, 이와 같은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상기금을 창설할 것을 권고하였다.⁹⁵⁾

2. UN의 'Declaration'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UN의 Declaration(피해자선언)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최초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1948년 12월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제정된 이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⁹⁶⁾이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⁹⁷⁾과 같이 범죄피해자의 특정 부류의 인권침해를 방지

9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5 - §7,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https://www.ohchr.org> 유엔공식웹사이트<2022. 06. 11.검색>.

95)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8 · §12,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https://www.ohchr.org> 유엔공식웹사이트).

96) 본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에서 채택되어 1981년 9월 3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5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https://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 유엔 조약집,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외교부-국제인권협약)<2022. 06. 11.검색>.

97) 본 협약은 1950년 11월에 유럽지역 국가들이 서명한 후 1953년 9월에 발효되었다(<http://hrlibrary.umn.edu/instree/K-ainstls1.html>, U.S 미소나타 인권도서관)<2022. 06. 11.검색>.

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긴 하였지만,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표방된 국제규범은 ‘UN 피해자선언’이 최초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범죄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정보,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정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중대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건이나 특별히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은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다(UN 피해자선언 제6조(a)).

그러나 UN 피해자선언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 정보권 ‘victim’s right to information’이라고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없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역시 독립된 조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의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기회’⁹⁸⁾라는 제목 아래 범죄피해구제제도 및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책임성 확보의 설명과 덧붙여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UN 피해자선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효성 부분에서의 한계점이 발견된다. 일각에서는 UN 피해자선언을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로 온전히 정착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⁹⁹⁾

II. EU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Framework Decision’ 또는 ‘FD’)」(이하 ‘EU기본결정’)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피해자 보호지침(‘Victim’s Directive’ 또는 ‘VD’)」(이하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EU의 FD(Framework Decision)나 VD(Victim’s Directive)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국한되어 시행되는 국제규범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적 근거로 적용되긴 힘들지만, 선진적인 제도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

98) Access to Justice and Fair Treatment

99)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국제규범들과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소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2015, 199-200면.

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¹⁰⁰⁾

1. EU의 ‘Framework Decision’과 ‘Victim’s Directive’의 배경

EU(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3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Framework Decision’ 또는 ‘FD’)」(이하 ‘EU 기본결정’)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 이 기본결정에 협력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EU 기본결정¹⁰¹⁾은 2001년 3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채택되었는데, 전문의 12조 항과 본문의 19조 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은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관련지어 존중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본문 내용은 대부분은 ‘UN 피해자선언’의 조항을 채택하여 수용하였다. 이러한 EU 기본결정의 규정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후로 범죄피해자를 돕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EU 기본결정의 본문에서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지원 단체, 형사사법 절차 및 형사사건에의 조정에 대한 정의·규정을 시작으로 범죄피해자 존중, 청문, 증거제공, 사건정보를 받을 권리, 의사소통의 보장, 범죄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범죄피해자의 비용지출, 범죄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및 보상받을 권리, 형사조정, 국외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등을 명문화하여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

EU 기본결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UN Declaration보다는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힘도 주어져 있었다.¹⁰²⁾ 그러나 EU 기본결정의 규정을 회원국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¹⁰³⁾ 이에 따라 2012년 유럽연합은

100) FD나 VD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 정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316-317면).

101)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2001년 3월 15일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 입장에 관한 평의회 기본결정.)

102) Marc S. Groenhuijze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cy in relation to victims of crim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Vol 20(1), 2014. 36면.

103) 2001년에 FD가 제정되어 발효되었지만, 2004년까지 FD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피해자 보호 지침(‘Victim’s Directive’ 또는 ‘V D’) (이하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원조에 관한 회원국에 대한 장관위원회의 권고」(이하 ‘장관위원회 권고’)는 2006년 EU의 이사회 장관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장관위원회 권고는 1985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2차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유럽 회원국에 대한 권고안」을 보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당 권고안을 보충하기 위해 1987년 채택되었던 「피해자 원조 및 피해자화 예방에 관한 권고」의 내용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위원회 권고’의 내용이다.¹⁰⁴⁾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 보호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에 의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에서 구속력이 인정되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제4조는 ‘right to receive information(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라고 하여 EU 기본결정과 같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제6조에서는 “회원국들은 피해자가 겪은 형사범죄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시작된 형사소송절차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이 없이 그들의 요청에 기반하여 정보제공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범죄피해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⁰⁵⁾ 이는 1985년 발효한 ‘UN 피해자선언’이 가진 법적 취약점의 극복을 위한 조치 및 2001년에 제정된 EU 기본결정의 집행상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한

입법한 회원국은 아무도 없었으며 5년 후에야 비로소 27개 회원국 중에서 13개 회원국만이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경과를 보여 주었으나 FD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Marc S. Groenhuijze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cy in relation to victims of crim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014. Vol 20(1), 36면).

104) 김경렬·전명욱·도중진,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국, 2009, 49면.

105) 유럽연합 기본권 보호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은 ‘Victim’s Directive’상의 제6조를 ‘피해자의 정보권(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ir case)’으로 명시한 가운데 이를 의무적 입법사항임을 회원국들에 주지시키며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FRA, “Victims of crime in the EU: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4. 37면).

입법 조치라는 성격도 함께 있는 것이다.

2. 'Framework Decision'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UN 피해자선언과는 달리 EU의 Framework Decision(이하 'EU 기본결정')은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명문의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EU 기본결정 제4조의 제목을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information)'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UN 피해자선언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명문화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그리고 간접적이고 부가적인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EU 기본결정의 경우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 유형과 내용이 UN 피해자선언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즉, EU 기본결정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단체의 종류,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 범죄신고의 장소와 방법, 범죄신고 절차와 그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방법과 조건, 법적 상담과 법률구조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 범위와 조건, 범죄피해자 구조금 수급요건,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의 경우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건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⁶⁾

UN 피해자선언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의 제공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명시 없이 다만 범죄피해자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자신과 관련된 정보와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제6조 (a)). 그러나 EU 기본결정의 경우에 국가기관은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접촉하는 시점에 범죄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적절한 수단·방법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리고 UN 피해자선언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신변안전 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위

106)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국제규범들과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1면.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이 없으며(제6조(d)), EU 기본결정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아 석방될 때 범죄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제4조 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변에 대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은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반면에 특정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피해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EU 기본결정은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정보의 제공이 법률상 강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의 거부권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제4항). 그러나 UN 피해자선언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Victim's Directive'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EU의 Victim's Directive(이하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부분이 있다면 바로 범죄피해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understand)', '이해받을 권리(right to be understood)'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⁰⁷⁾ 이는 제공되는 정보의 의미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범죄피해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상대방에게 올바른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의 전달을 도와줄 조력자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EU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은 UN 피해자선언이나 EU 기본결정과는 다르게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즉,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제4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최초 접촉 시 정보를 제

107) Victim's Directive Article(제3조)(<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유럽연합공식 웹사이트).

공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information from the first contact with a competent authority)를, 제5조에서는 '고소 시 범죄피해자의 권리'(Right of victims when making a complaint)를, 제6조에서는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ir case)를, 제7조에서는 '통역 및 번역에 대한 권리'(Right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¹⁰⁸⁾를 각각 보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하여 어느 국제규범보다 세분화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UN의 피해자선언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 제4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은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접촉하는 시점에 범죄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적절한 수단·방법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여, 서문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들을 피력하고 있다.¹⁰⁹⁾ 즉, 정보의 내용을 범죄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매체를 사용하되,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 구두·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 정보의 내용은 범죄피해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제공의 시기와 방법, 내용에 대해서도 EU 기본결정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범죄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조사의 진행과 결정, 재판의 시간과 장소, 가해자에 대한 혐의내용, 재판에서 최종판결, 판결 이유, 등에 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최근 주소 및 전자적 주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범죄피해자가 다수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웹사이트나 언론의 활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기존 어느 국제규범보다 가장 구체화되고 다각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U의 기본결정은 가해자 구금, 기소, 석방, 탈출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108) Victim's Directive Article(제4조-제7조)(<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유럽연합공식 웹사이트).

109) Victim's Directive 서문 (21)-(30)(<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유럽연합공식 웹사이트).

있는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은 이러한 내용을 서문과 본문을 통하여 재차 중복해서 다루며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의 「서문(32)」¹¹⁰⁾와 「서문(33)」¹¹¹⁾에는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탈출한 사건의 경우에 범죄피해자가 보복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정보제공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석방 결정에 경우에 범죄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U 범죄피해자 보호 지침의 제6조 제5항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범죄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통보받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III.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UN 피해자선언’은 회원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¹¹²⁾ 국제기구인 UN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이고 현

110) Victim’s Directive 서문 (32) 가해자의 석방 또는 탈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험 또는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로 인한 가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통지로 인해 발생할 가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확인된 경우, 관할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른 모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확인된 것’에 대한 언급은 범죄의 본질과 심각성, 보복의 위험과 같은 요인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소한 범죄가 저지른 상황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약간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유럽연합공식 웹사이트).

111) Victim’s Directive 서문 (33) 피해자는 해당 권리가 국가법에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 석방 결정에 대한 항소할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유럽연합공식 웹사이트).

112)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2021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418건(양자 2,693건, 다자 725건)이다. 이 중 1960년 이전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하지만 2011~2021년까지 11년간 발효된 조약은 671건(양자 560건, 다자 111건)이 있다. 그러나 ‘UN 피해자선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의 전단에서 규정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다. 이미 다자간

실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선언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에서 채택되어 1981년 9월 3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5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U의 FD나 VD는 ‘UN 피해자선언’이 가진 법적 취약점의 극복을 위한 조치 및 FD의 집행상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나, 유럽연합의 회원국만을 상대로 시행되는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국제적 선언이나 규약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선진적인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보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진보된 규정을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외국의 피해자 권리 및 정보권

외국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의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고, 영미법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미국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각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위와 정보제공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규정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미국

조약으로 채택되어 국내에 발효 중인 ‘세계인권선언’에도 국내법적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전원재판부),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보고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https://www.mofa.go.kr/www/wpge/m_3832/contents.do).

미국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피해자나 증인의 협조를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반면에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아주 미비한 정도였다. 미국에서도 18세기 후반까지 개인이나 집단이 법으로 범죄피해자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형사소추에서도 이른바 당사자주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립양상으로 범죄문제가 처리되기 시작하였고,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의 설립과 동시에 연방과 주 정부 차원의 범죄피해자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크게 나누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¹¹³⁾ 우선 1단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65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그램(Victim Compensation Program)이 제정·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¹⁴⁾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강력범죄의 증가와 인한 피해 발생이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¹¹⁵⁾

113) 1982년의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중죄로 규정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첫째,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의 적정화(예, 증인에 대한 독립된 대기실의 확보, 수사기관에의 피해자지원 활동에 관한 연수 등), 둘째,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예, 판결 전 조사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영향에 관한 진술도입, 보석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 존중 등), 셋째, 피해배상의 제도화(예, 피해배상을 주형으로 도입 등)이다(이재영·김연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6, 264면).

114) 1965년 캘리포니아 주가 뉴질랜드,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한 이래, 1992.4월 메인 주가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을 법률로 제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재원 마련을 위해 31개 주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세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해자의 벌금, 과료, 몰수한 보석금 등으로, 워싱턴주는 일반세금만, 그 외의 주는 일반세금과 벌금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공정식,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제45호, 2015, 24면).

115) 1965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먼드 브라운은 “예컨대 강도 행위 시에 한 가족의 부양자를 살해한 자는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 피난처, 의료보호를 기본적으로 받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족은 궁핍에 빠지게 된다. 공공부조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는 것이어야만

다음은 제2단계 범죄피해자 지원 조치인데 1970년대에 공·사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에 의한 긴급 서비스 및 유사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직접적 피해자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⁶⁾ 이는 3곳의 범죄피해자지원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서 시작한 후 전미로 확대되었다. 3단계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법적 지위가 향상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1960년대에 형사사법기관의 무신경한 처우로 인한 법집행기관에 불신감과 ‘제2차 피해자화’의 실태가 지적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책이 형사사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시대별로 요약하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피해자 원조를 위한 여러 조직’과 ‘피해자의 법률원조기구’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위한 기구가 많이 생겨났고, 연방의회는 1982년에 ‘피해자 또는 증인 보호법’(The Federal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¹¹⁷⁾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The Victim of Crime Act of 1984: VOCA),¹¹⁸⁾ 1997년에 범죄피해자의 권리해명법(The Victims right Clarification Act: VRCA)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형사절차에서 검사나 법원이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¹¹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정비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이다.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첫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1, 18면).

116) 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19면.

117) 피해자·증인을 위한 3가지 목적으로, 첫째는 연방 범죄의 피해자·증인에 대한 현존하는 법적 보호 강화 둘째는 미연방 법무부 장관의 지침 제정촉구 셋째는 주와 지방 차원의 법률제정을 위한 모델이다(이운호, 『피해자학연구』, 집문당, 2007, 280면).

118)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s Fund)’이 창설되는 외에, 2009. 2월 Obama 정부가 승인하여 발효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회복법(recovery Act)도 제정되었다(남상관,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소고-노스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I) 제25집, 대검찰청, 2010, 377-436면).

119) 안성수, “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강화방안”, 형사법의 신통향 통권 제16호, 2008, 6-8면.

이러한 연방 법률을 모태로 하여 각 주에서도 범죄피해자 또는 증인을 보호하는 여러 입법을 시행하여왔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단계별 권리 고지 및 절차’, ‘참가의 보장 및 피해자와 증인에 대하여 다양한 원조 제공’, ‘피해회복’,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을 부분은 범죄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하여 다른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손꼽을 수 있다. 대부분 주에서 사법 방해, 증인매수 또는 증인위협을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새로운 법률들은 소환된 증인들의 범위를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 ‘그의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자’, ‘어떤 범죄든 고발한 자’, ‘소환장을 받은 자’, ‘이성적인 사람의 판단에 의할 때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협의 의미를 확장하였다.¹²⁰⁾

그리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을 기점으로 하여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정보권, 참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토대로 주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중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기본인 정보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증인 지원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며 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신고의 수리, 의료서비스 지원, 카운슬링 등의 각 지원프로그램, 피해배상 등의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 서비스 프로그램 소재지, 연락처 및 배상·보상 신청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와 관련되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해 수사의 진행 상황, 체포, 기소, 재판 일정, 신변의 상황, 사실인정 여부의 결과, 판결의 양형과 가석방 가능 시기, 판결 후의 가석방, 청문 일정, 도주·일시귀휴·석방·사망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¹²¹⁾

수사기관의 책임자¹²²⁾는 기소 전에 피해자 통지시스템(VNS)에 범죄피해

120) 천주희,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9, 23면.

121) Audit Report, “The Department of Justice’s Victims Notification System”,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udit Division, 2008 및 U. S Department of Justice, “Victim Notification Program-Victims Notification System”, 2020.

자의 이름과 연락 가능 정보를 직접 입력하며, 비수사기관은 확인된 범죄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 정보를 기록한 목록을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책임자는 범죄 발생 즉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범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를 알려주며, 전문가 및 기타 중요 공무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실린 피해자 지원 카드를 범죄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범죄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³⁾

또한, 재판단계에서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범죄피해자가 공판에 참여할 권리(18 U.S.C. § 3510), 범죄와 관련된 재판, 가석방 절차와 기타 마지막 심리, 심리의 시간이나 날짜 변경 시에 책임자가 전화나 다른 신속한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규정(18 U.S.C. § 3771)하고 있으며, 가해자해 대한 기소장 제출 여부, 가해자 또는 용의자의 석방 혹은 탈옥, 재판 일정, 피해자나 증인의 출정 요구, 공판절차의 예정 혹은 일정 변경, 공판 후 평결의 제시나 유죄 인정 동의, 유죄판결의 형량을 고지, 보호관찰의 조건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2 U.S.C. § 10607(c)(3)). 집행단계에서는 교정절차와 관련된 석방·귀휴·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으로, 가해자의 석방, 구금 상태, 가석방 절차의 참여, 검사와 상의할 수 있는 권리, 선고받은 형, 석방 조건, 교도국 통지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18 U.S.C. § 3771(a)), 가해자의 가석방 자격이 부여되는 날짜, 석방 심사 일정이 잡힌 날짜, 도주·노동·석방·귀휴, 다른 방식의 가해자 석방, 가해자의 구금 중 사망, 사망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2 U.S.C. § 10607(c)(3)). 특히 가석방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가해자의 조건 위반으로 가석방 철회와 관련된 절차가 예정되었을 때에 책임자가 교도국과 협력하여 가석방이나 감독 석방이 부과된 날짜, 철회 절차의 날짜와 시간, 가해자가 석방되기 30일 전

122) 수사기관의 책임자는 ① 연방수사국의 수사 책임을 지는 부서의 담당 특수요원 ② 알코올, 담배, 화기와 폭발물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의 수사 책임을 지는 부서의 담당 특수요원 ③ 미연방 보안관국(Marshals Service)의 사건조사 중인 연방 보안관 ④ 감찰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감찰관을 말한다.

123) 장규원·윤현석,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 62면.

에 석방 날짜, 가해자가 석방될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⁴⁾

더불어 형사절차에서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유죄협상 제도’¹²⁵⁾가 있는데, 1982년에 ‘피해자 증언 보호법’이 제정되어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에 대하여 협상할 경우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반드시 참고하게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원상회복 절차의 하나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조정·화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조정인이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가운데 개입하여, 서로 간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요구를 실현하고 피해배상을 촉구하여 가해자의 자기 책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각 지역의 경찰서, 검찰청에는 범죄피해자 원조사무소가 설치되어 범죄피해자나 증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형사절차에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피해자의 상황을 대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입법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NOVA는 정책제언자로서의 업무, 카운슬러, 변호사 또는 사회활동가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업무, 1980년 이래 500회 이상의 전국, 주별, 지역별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전문가집단에 대한 지원업무,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북미피해자 지원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를 위한 전국 포럼 등을 개최하는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²⁶⁾ 또한, 하와이,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알래스카, 애리조나주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일깨워주고 이행 실태를 감독하는 옴부즈맨 제도¹²⁷⁾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바다주는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충고나 원조를 제공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동반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24) 윤현식,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 14권 제1호, 2012, 301면.

125) 범죄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게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126) NOVA는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 기구이다(<https://www.trynova.org>)<2022. 06. 11. 검색>.

127)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지방검사를 옴부즈맨으로 지명하여 피해자에게 권리를 일깨워주고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정적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II. 영국

영국은 1920년대에 범죄피해자보상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기도 하여, 1948년에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이 제정되어 형벌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다.¹²⁸⁾

영국의 형벌개량운동가 Sara Margarey Fry¹²⁹⁾여사의 범죄피해자보상 운동을 통하여, 1954년 범죄피해자 실태에 대한 피해구제에 큰 관심을 쏟았고 1975년 5월 7일 당시 일류 신문잡지인 the Observer에 논문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게재하며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주장하였다. Margarey Fry여사가 소외 치안판사로서 수형자·기결수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수형자·기결수의 인권과 형벌에 대한 개량 운동을 전개하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외친 것은 현재 형사사법과 형사정책 운동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실이다.¹³⁰⁾

이후 1973년에 ‘전국피해자협회’가 설립되었고, 1990년 2월 영국 내무성에 의하여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기본 권리를 선언한 ‘피해자헌장’(Victim’s Charter)이 공포되었다.¹³¹⁾ 1995년도에 범죄상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이 마련되었고 이후 형사사법기관별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업무들을 규정한 ‘피해자헌장’ 개정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과 수사 및 재

128) 瀨川晃, 『イギリス刑事法の現代的展開』, 成文堂, 1995, 4면.

129) 사라 마게리 프라이(Sara Margery Fry, 1874년 3월 11일부터 1958년 4월 21일)는 영국의 교도소 개혁가이자 치안판사가 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다.

130) 차용석,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일반론”, 법학연구 제27집, 2007, 269-270면.

131) 2001년 2월 런던경시청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범죄 수사지원관(SOIT)이 피해자와 처음 접촉하였고, 수사관들에 의한 24시간 긴급전화개설, 자치구별로 수사 전담팀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인 쉼터 프로젝트에 관한 피해자 검사 및 의료조치 시행, 경찰관 행동지침 매뉴얼 제정, 피해자인터뷰 녹화제도 등을 도입하였다(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20면).

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정하였고, 검찰에서는 '검사의 규칙'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 제한,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 경찰로부터 소송 경과 정보제공, 변호사의 소개, 사건 결정 시 유족의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였다. 법원의 의무로서는 법정에 범죄피해자 전용 대기실 설치와 피고인과 떨어진 곳에 방청석 확보, 증인 서비스의 협력,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비디오 녹화방식 등에 의한 증인신문 실시, 증인으로 증언 시에 칸막이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보호관찰소의 의무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기결수·미결수)의 형의 집행내용, 석방 시기, 석방 결정의 판단기준, 가석방 후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진술 절차로 범죄피해자 개인 진술(Victim Personal Statement)절차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또는 물리적·정신적 피해, 그 외 범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기소 또는 불기소의 판단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제도로, 영미법계의 캐나다, 미국 등에서 입법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특히 1951년에는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의 도입과 함께, 1957년에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하였으며,¹³²⁾ Margarey Fry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구조는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주장¹³³⁾에 입각하여 1964년에 범죄피해자보상제도(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범죄상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보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법원은 형벌의 선고 대신에 중재자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죄와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미한 사건과 소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론에서 기초한 것으로 당사자 간 중재는 주로 교회나 자원봉사자단체가 역할을 맡았다.

132)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79-80면.

133) 특히 Margery Fry는 영국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구제 의무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회에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국가라고 하여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채용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1960년대 초기에 범죄피해자의 보상제도를 시행한 국가이면서 범죄피해자보호단체에서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모든 범죄의 방지대책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해서, 국가가 반듯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범죄피해자보호단체로는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 VS)가 있다. 피해자보호협회는 1974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하부 조직으로 ‘브리스톨’에서 결성되어 전국 82곳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다.¹³⁴⁾ 이 협회는 1995년 범죄피해보상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보상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운영비나 보상신청자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 배려이다.¹³⁵⁾

1972년 형사재판법에 따라 법원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구형, 벌금형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상명령·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상해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는 종래의 제도에서 개별사례 등에 근거로 하여 상해의 정도를 심사하였으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상해 정도를 25단계로 나누어 상해 부위 및 정도에 의해 자동으로 상해 수준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높아졌다.¹³⁶⁾

영국의 범죄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기관과 민관기관의 협조와 공조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기관의 사무실은 전국형사법원 내에 설치하고 있고,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재판 선고 이후의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담당관은 사건 전반에서 증인과의 모든 의사소통에 단일창구 기능을 하며, 지원 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¹³⁷⁾ 그 밖에 영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증인 보호법 이외에 사인소추 제도, 소송참가제도, 부대사소 제도, 임의적인 절차참여권,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증인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와 피해회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³⁸⁾

134)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호, 2006, 26면.

135) 차용석,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일반론”, 275면.

136) 김현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20면.

137) 김정혜,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 및 외국의 관련 제도” 법무부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 2012, 35면.

그러나 영국은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을 규정한 법률은 없고, 다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행동규약¹³⁹⁾과 피해자헌장¹⁴⁰⁾에서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살펴보면, 수사결과 통보제도를 통해서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보고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사건 담당 직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범죄피해자는 이 담당 직원을 통해 수사의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¹⁴¹⁾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기소하면 피해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 담당 직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증인 자격으로 공판 절차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공소내용의 변경이나 기각, 공판일, 최종결과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다. 또한,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되었던 용의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 체포되었던 용의자를 경찰보석으로 일단 석방하는 경우, 경찰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각 경우에 경찰은 취약한 범죄피해자¹⁴²⁾나 위축된 피해자에 대해서 1일 이내에, 그 밖의 피해자는 5일 이내에 위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수사경찰관이 검사의 조언을 청취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는 때에도 경찰관은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³⁾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은 형사절차상 각종 결정에 관한 정보, 보석 신청에 따른 기일과 이후 진행되는 각종 절차를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

138)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33면.

139) Th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 2021. 4. 21.)

140) Victim Charter (<https://www.justice-ni.gov.uk>, 2019. 1. 11.)

141) 수사결과 통보제도는 모든 경찰서에서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이다.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또는 소추되면 피해자는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고지를 받는다. 이 같은 정보는 검찰 서비스가 아닌 경찰 서비스에 의해 피해자에게 고지되는데 한 편 피해자에게 모든 정보를 연락할 책임이 있는 경찰 시스템은 피해자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The Statement on the treatment of vic-tims and witnesses, The Crime Prosecution Service, the UK, 1993).

142) 나이가 18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또는 정신적 장애, 학습능력 장애,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증언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143) 장규원·윤현석,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63-64면.

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가 취약한 피해자이거나 위축된 피해자일 경우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하고, 범죄피해자 권리 현장에 따라 재판 일시, 장소가 기재된 소환장, 최종결과를 통보받고 있다. 만일 살인 피의자가 살인사건 또는 강간 등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유족이나 범죄 피해자에게 항소심의 공판일과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¹⁴⁴⁾

집행단계에는 가해자가 18개월 이상의 구금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급고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가해자의 석방일(임시 석방은 제외), 석방되기 전에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망일, 가해자의 국외 이감, 가해자의 임시 석방 자격 획득, 가해자의 탈옥, 무단이탈, 탈옥 혹은 무단이탈 중인 가해자의 체포 여부를 제공한다 「형사소송법」(제16조). 가해자가 조건부 석방을 받은 때에는 가석방위원회가 권고된 석방 조건이 무엇인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며(동법 제17조), Part 1, 2¹⁴⁵⁾ 체계로 구분되어 고지되고 있다.¹⁴⁶⁾

III. 독일

독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제도 발전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늦은 편으로 1960년대까지는 범죄학 틀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197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조사연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 조사 연구방법이 발전·확립되어 갔으며, 1986년 12월 18일에 성립된 피해자보호법(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개선에 관한 제1차 법률)은 관심 밖에 있었던 범죄피해자를 주목하여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등 일부를 개정하였다. 위법은 첫째 “인간의 존중”이고, 둘째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고, 셋째 가해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하여 피해자

144) 김한수, “영국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38면.

145) Part 1은 가해자의 석방 예정일, 구금 중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송된 경우 그 날짜, 가해자가 처음으로 임시 석방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탈옥이나 무단이탈 시(48시간 이상 도주 중일 때), 재수감되었을 때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으며, Part 2는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해자 자신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가석방 조건이 있는지를 고지받는다.

146) 윤현석,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302면.

에게 정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에 제정된 증인 보호법은 1996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199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제출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법이다.¹⁴⁷⁾

독일에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의 관여 및 참여 등에 관계되는 제도는, 고소, 사인소추, 소송참가, 부대 소송 등의 제도가 있다. 이 중에 독일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에는 사인소추와 부대사소¹⁴⁸⁾가 있다. 사인소추는 경미한 범죄의 피해자가 검사의 수사·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기소하는 제도지만 부대사소는 검사가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유족 등이 스스로 소추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도(독일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약칭 Stpo 제 374조)가 있다. 검사는 특정한 범죄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범죄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tpo 제 376조).¹⁴⁹⁾ 그러나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해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발생하였던 소송비용까지 범죄피해자에게 부담케 하고 있어 사인소추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사인소추에 의하도록 결정하여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10% 정도만이 실제 소로 제기되었다고 하며, 사인소추 사건 중에서 약 6%가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한다.¹⁵⁰⁾

일정한 중죄의 경우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당사자로서 참가하여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동등한 지위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소송참가제도가 있고,¹⁵¹⁾ 피고인에게 처분한 과형의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민사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대사소 제도 절차가 있다.

147)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56면.

148) 부대사소(附帶私訴)란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제도로 한국의 ‘배상명령신청’이 있다.

149) 사인소추가 가능한 범죄로는 주거침입죄, 모욕죄, 협박죄, 서신 비밀침해죄, 거래상의 수뢰 또는 중죄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정 범죄행위, 특허법상의 일정 범죄행위, 실용신안법, 반도체보호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행위 등이다

150) 김정연,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82면.

151)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34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우선 연방 법무부는 형사절차 및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가 담긴 소책자‘피해자 안내서’(Opferfibel)를 발행하여¹⁵²⁾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범죄피해자에게 소송절차의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 형사소송기록의 열람·등사, 변호사에 의한 범죄피해자 및 소송참가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보조와 상기 내용을 범죄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 의무가 있다. 특히 형사소송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해서는 주목할 만한데,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e조 제1항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인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한 법원에 존재하거나, 또는 기소되었을 경우에도 법원에 존재할 소송서류 등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된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범위를 소송기록 전체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2항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보호 필요성이나 수사의 목적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¹⁵³⁾하고 있으나, 그 제한규정은 최소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는 소송서류 및 증거물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규정과 비교하면 좀 더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외도 일정한 중죄에 대하여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당사자로서 참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송참가제도가 있고, 가해자와 범죄피해자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가해자와 범죄피해자의 화해제도 방식도 존재한다.¹⁵⁴⁾ 화해로 인해 물질적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불안감이나 정신적 부담을 제거하고, 법질서에의 신뢰를 회복 또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분쟁 해결의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된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책임의 자각을 촉진한다고 하는 교육적 의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⁵⁾

152) <http://www.bmj.de/SharedDocs/Publikationen/DE/Opferfibel.html> 에 접속하면 최근 발행된 2022. 2. 1.자 책자를 볼 수 있다(2022. 3. 16.검색).

153) 양경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139면.

154) 화해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을 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배상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다.

155)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

IV. 프랑스

프랑스는 대륙법계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치는 나라 중, 전통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가 아주 강한 나라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배제의 전략(strategy of exclusion)을 취하는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는 피해자를 범죄 수사와 진압의 적극적 협력자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 연대의 전략(strategy of alliance)을 취하고 있다.¹⁵⁶⁾

프랑스 형사절차에서 대표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에는 사인소추권,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피해자지원 단체의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검사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형사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권(action civile)’을 인정한다. 사인소추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도 인정되고(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조),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피고인 및 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소의 원고인(partie civile)을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조, 제5조), 1970년대 이후에는 사소 제도를 중심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추진을 도모하고, 그와 동시에 국가보상제도를 설치하여 경제적 지원 이외의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1993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기소, 불기소 판단 전에 검찰관이 범인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규정하였으며,¹⁵⁷⁾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조 ‘사소권은 공소권과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범죄로부터 직접 기인한 개인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⁸⁾

프랑스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는 조사 및 소추 단계,

학원, 2004, 126-129면.

156) 전수영, 『범죄피해자보호방안』, 한국학술정보, 2009, 44-45면.

157) 전지연,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87면.

158) 손병현, “현행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221면.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조사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는 없고,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범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반면,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는 그 지위가 강화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중재절차¹⁵⁹⁾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동시에 직접 범죄피해 당사자가 소송원고를 구성하여 법원이나 예심판사¹⁶⁰⁾에 고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당사자인 소송원고는 검사와 피고 외에 스스로 형사재판의 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의 모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변호인 참여권 행사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도 있다.¹⁶¹⁾

재판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집행관을 통해 범죄혐의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청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환장을 직접 범죄혐의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사건을 형사법원을 통해 접수·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재판이 개시된 사건은 범죄피해자가 직접 참가하여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는 재판과정 중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증거수집에 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적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에 관한 권리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에 의한 정보제공, 사법관(검사, 판사)에 의한 정보제공, 형 집행 과정

159)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509조에 의하면 중재 합의의 절차에 관하여 중재 합의가 직접 적용될 절차를 명시할 수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중재 규칙이나 절차적 규칙의 인용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당사자 공평 대우 원칙(principle of equality),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due process)와 차단원칙(principle of estoppel)이다(조희경, “프랑스의 2011 개정된 중재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285면).

160) 예심판사(豫審判事, inquisitorial magistrate)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하는 판사를 말한다. 수사판사(搜查判事, investigating judge)라고도 부른다. 1808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다.

161) 전수영, 『범죄피해자보호방안』, 48면.

에서의 정보제공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사법경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관할법원에 사소 청구하거나 예심 수사판사에 고소할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해자지원 단체에 도움받을 권리, 배상을 청구할 권리, 보호처분을 청구할 권리, 가해자의 형벌 정도 및 구체적인 형 집행 조건은 무엇인지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51-1조, 제75조).¹⁶²⁾

검사는 기소 결정 또는 기소 대체처분 결정을 한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이유와 근거에 관하여도 통지를 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제4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 항고를 명할 수 있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면 그 사실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제40조-3조).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사소 당사자 구성을 희망하고 변호사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에게 고소의 처분결과를 통지하면서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계속 원할 때 피해자는 곧바로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직접 그 요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40-4조).¹⁶³⁾

예심 수사단계에서 예심 수사판사는 예심 수사의 개시 즉시 범죄피해자에게 절차의 개시, 사소 당사자를 구성할 권리와 그 방법을 통지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이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사소 당사자가 되어 변호인의 지명을 요청한 경우 예심 수사판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80-3조). 재판단계에서 검사는 범죄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3-1조), 또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06-3¹⁶⁴⁾조

162) 형사소송법 제53-1조는 현행범 수사(enquête de flagrante)에 있어서, 제75조는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현행범 수사 및 예비수사와 예심 수사판사의 예심 수사로 구별되는 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는 수사이고 양자는 ‘범죄의 현행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된다.

163)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2호, 2012, 71-72면.

및 제706-14¹⁶⁵⁾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자에게 사소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때 사소 당사자에게 범죄피해자배상위원회(CIVI)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06-15조).¹⁶⁶⁾

형 집행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형벌적용 판사가 존재하는데, 형벌적용 판사는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단계에서 형의 집행정지, 분할, 감경, 변경, 가석방 등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행하고,¹⁶⁷⁾ 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보

164) 제706-3조 ①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의 실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람에게 대한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1. 그 침해가 2001년 사회보장재정법 제53조 및 보험법 L.126-1조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위 개선과 보상촉진에 관한 1985년 7월 5일 법률 제85-677호 제1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렵 또는 유해동물의 제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 것, 2. 그 행위가 사망, 영구적인 신체장애 또는 1개월 이상의 전면적인 노동능력상실에 관련되거나, 형법 제222-22조부터 제222-30조, 제225-4-1조부터 제225-4-5조, 제227-25조부터 제227-27조에서 규정하고 처벌한 것과 관련된 것일 것, 3.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일 것.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소속 국민이거나, 조약이나 국제협력에 의해 행위 또는 배상 청구 시점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을 것, ② 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65) 제706-14조 ① 절도, 사기, 배임, 강취, 자기 소유의 재물손괴 또는 파괴의 피해자는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유효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처한 자는 그 수입이 법률구조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 제91-647호에 규정된 상한선 미만일 때는 제706-3조(제3호 및 최종항) 내지 제706-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가족부양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분적인 재판상 구조를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상은 전향의 수입 상한 월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의 규정은 제706-3조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대한 침해의 피해자로서 1개월 미만의 노동능력의 완전한 상실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손해의 완전한 배상을 받기 위한 이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66)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72-73면.

167) 프랑스에서는 수형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인권보장 및 형집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형집행 단계에서 판결 확정 후 사정을 참작하여 확정된 형을 변경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바,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된 경우 형벌적용 판사는 검사로부터 판결문과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소환하여 1개월 내의 조사과정을 거쳐 조건부 석방 여부 및 수감 장소와 형태 등을 결정한다.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벌적용법원(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기가 종료되기 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결정이 범죄피해자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형벌을 개별화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숙고하여야 하며, 특히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범죄피해자와 대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에 앞서 피해자에게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수 있고, 이 고지는 직접 또는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견은 적절한 모든 방법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12-16-1조). 그리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범죄피해자와 대면할 위험이 있고, 그 대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형벌적용법원은 구금 상태를 종료하는 결정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접촉 및 접근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금지조치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범죄피해자에게 고지하며, 금지 의무를 어길 때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하여도 또한 고지하여야 하는(형사소송법 제712-16-2조 제1항, 제3항)¹⁶⁸⁾ 등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화해·조정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공질서의 혼란을 종식하며, 범죄자의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의 제안으로 인하여 제삼자인 중개자에 의해 범죄자와 범죄피해자를 소집하여 자유롭게 해결책을 찾아 조정안을 마련하고 피해회복의 세부방식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가 검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검사가 법원장의 승인 명령을 받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피의자가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무의 이행으로 공소권은 소멸한다.¹⁶⁹⁾

이 외에도 프랑스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¹⁷⁰⁾이 이

168)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73-74면.

169)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2009, 172면.

170)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국조직으로 성장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루어지고 있는데, 1980년대 초까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140여 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1986년 ‘국립피해자 원조·중재센터(Institut national d’aide aux victimes et médiation: INAVEM)’가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구조 단체들에 대한 조정 작업과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개시 이전 가해자-피해자 중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실체의 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은 민간 운동단체이다.¹⁷¹⁾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프랑스 전역으로 지방법원이 있는 도시마다 지원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¹⁷²⁾

V. 일본

일본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태동기, 모색기, 발전기, 피해자지원체제 강화의 4단계로 구분¹⁷³⁾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 직접적인 피해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도기관 등에 의해 명예, 생활의 평온 등이 위협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상해, 강간, 살인 등의 신체범과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등의 사건에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지정된 경찰관이 범죄피해자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요원제도를 운영하여 의료, 사건조사, 동행, 상담, 법적 지식 설명 등과 아울러 필요한 연락과 지원 단체 소개 등도 도우미로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몇 가지 조치하고 있

갖추고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2010년 5월 14일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검찰주도로 이루어져 범죄피해자보호의 기본법령을 갖추게 되었다.

171) 전수영, 『범죄피해자보호방안』, 48-49면.

172) 손병현,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4. 77면.

173) 첫째는 1970년대 ‘태동기’로 피해자 보상에 관한 입법화의 운동이 시작된 시기이고, 둘째는 1980년대 ‘모색기’로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지급법’의 제정을 목표로 놓아진 피해자대책 정비의 움직임은 법률제정과 함께 진정되어 가는 시기이고, 셋째는 1990년대의 확대 및 발전기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며, 넷째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피해자지원체제 강화의 도모이다(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35면).

는데, 범죄피해자 등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법정에서 증인, 피고인, 방청인 사이에 별도의 차폐장치 및 스크린을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증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는 범죄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정의 진술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는 ‘보좌인’과 함께 법정에 동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보좌인’은 증인을 보조하여 신문의 내용을 쉬운 말로 전달하거나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은 범죄피해자를 진실발견을 위한 당사자의 지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면은 정보제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먼저 수사단계와 집행단계로 나뉘 볼 수 있고, 또한 수사단계는 경찰의 정보제공과 검찰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소송의 개요를 설명함과 함께 해당 사건의 수사 경과, 범죄피해자 등의 구제 또는 불안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범죄수사규범」(제10조의3), 사건에 한정을 두지 않고 수리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의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그 친족 혹은 그에 따르는 자나 변호인, 목격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대책요강」(제2조).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통지의 희망 유무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각 사항(사건의 처리결과, 공판기일, 형사재판의 결과)을 통지하도록 한다 「피해자대책요강」(제4조 제1항). 그리고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하고 생각되는 정보(형사절차, 원조 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 등)를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피해지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¹⁷⁴⁾

검찰은 범죄피해자, 그 가족 또는 사실혼 관계자, 약혼자 등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목격자와 같은 참고인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재판소 및 재판날짜, 재판 결과, 범인의 신병 상황, 기소 사실, 불기소 이유 등의 통지를 하는 ‘피해자통지제도’¹⁷⁵⁾를 운영하고 있으며, 2차 피해의 방지와

174) 장규원·윤현석,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65면.

175) 법무성은 1999년 형사국장의 통달(通達)로서 피해자 등 통지제도 실시요령을 공포하여 일부 검찰청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2000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에서 실시했다. 이후 2008년 12월 1일 개정하여 피

경감을 위한 제도, 정신적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 피해자지정 대책요원제도와 특별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집행단계에서는 범죄사건 외에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범인에 관한 사항(출소 예정 시기, 석방될 연월일 등)을 범죄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에 따르는 자만 통지하고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수용된 교도소의 명칭 및 소재지, 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만기출소 예정 시기)의 연월, 6개월마다 수형 중인 교도소에 대한 처우 상황통지, 만기출소나 가석방될 연월일 통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취소된 연월일, 가석방 심리를 개시한 연월일, 가석방 허가를 결정한 연월일, 가석방 후 보호관찰이 개시된 연월일, 보호 관찰종료 예정 시기, 6개월마다 보호관찰의 처우 상황, 보고관찰이 종료된 연월일을 통지하고 있다.¹⁷⁶⁾

VI. 소결

외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법체계를 따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된다. 달리 말해,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와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비슷한 법체계를 따르는 일본의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담요원제도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¹⁷⁷⁾이다.

독일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법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사인소추 제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한국, 일본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보제공에

해자와 그 외의 형사사건 관계자에 대해, 사건의 처리결과, 공판기일,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76) 윤현석,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304면.

177) 대한민국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전담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에 도움을 주는 피해자서포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서포터는 신변 보호·초기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피해자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전라북도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절차안내 강력범죄피해자안내문). 일본의 전담요원제도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그 운영 방법에서는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찰관이 범죄피해자의 지원업무를 전념하는 체제이므로 대한민국 경찰의 서포터 제도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관한 규정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사소권과 공소권이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범죄로부터 기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심 수사단계가 있어 법원이 수사를 통제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다.

한편,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지위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앞서 살펴본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반해 적극적이다. 영국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정책은 ‘피해자헌장’에 공포되어 있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범죄피해자를 따로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는 반면, 영국은 헌장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행동규약과 피해자헌장에서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원에 각종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입법의 과정에서도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에서 지적되었던 단서조항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려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지위도 상승하였다.

제5장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을 바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다. 각각의 법률에 존재하는 ‘범죄피해자 권리’ 규정이 과연 실효적인 권리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대책에 불과한데 형식적으로 ‘권리’라는 명칭만 부여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¹⁷⁸⁾ 범죄피해자가 단지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규정에만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과 법률상의 실효적 권리의 지위로써 보장받는 것은 보호 및 그 강도의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권리의 실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개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 및 정책들에 범죄피해자의 권리임을 표방하는 규정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리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가 매우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범죄피해자 대책 수준에 그치는 규정들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범위 확대

범죄사건 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검찰청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제20조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대검예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2항 등을 통해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렇듯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실제 법조문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앞서 설명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¹⁷⁹⁾ 중 법익의 균형성

178) 김재민, “범죄피해자 권리의 실효적 보장”,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7, 31면.

면에서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법익의 균형에 차이가 생긴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해당 법 조문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은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연구의 2장의 국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3장의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관한 국내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가해자에 반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범죄 사건 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 매우 다양한 제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람·등사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일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¹⁷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제20조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¹⁸¹⁾와 대검예규 중 「사건

179)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 입안·심사기준 책자, 2017. 12. 발간의 내용).

180) <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항~④ 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략함.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181) < 법무부령 제993호 「검찰보존사무규칙」 >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2항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사건기록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법적 근거, 특히 대검예규「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본인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소 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담당 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따른다. 그리고 규칙 제22조¹⁸²⁾에 의하여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18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 있다. 물론 사건이 진행 중인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기밀이나 공범의 진술이 유출되면 다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와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게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항변과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공소 제기 후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불기소 사건의 열람·등사)를 포함한 제3조의2(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제3조의3(진정·내사·시정·수사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3조의4(불송치 송부·수사 중지 기록 열람·등사)의 지침에, 동 지침 제4조 제2항의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서류에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동 지침 제4조와 동등하게 수정하여 준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에 따라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조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불기소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한다) 제69조, 규칙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① 불기소 사건기록.... 의한다 ②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제1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u>본인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u>
제3조의2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① 수사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 ②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등의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③ 체포·구속 피의자 등의 현행범 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3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제1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의3 【진정·내사·시정·수사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진정·내사·시정·수사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16조 제6항, 제69조,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한다.	① 진정·내사·시정.... 의한다 ②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제1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의4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열람·등사】	①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검토·보관 중인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3 소정의 불기소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절차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보관 중인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절차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제1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물론 위 지침은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위 지침을 보완한다고 하

여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침을 단순 행정규칙이 아닌 가령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하여 보완하는 것도 제안해 본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입법 또는 개정 절차는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므로 범죄피해자의 사건기록 등에 열람·등사 신청범위의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II. 사건의 ‘알 권리’ 고지 의무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의해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3장의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에서 범죄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문제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피해자에게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나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가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기소되었는지 불기소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가해자의 석방 여부는 범죄피해자에게는 제2차 피해 및 심리적인 불안 요소의 해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는 조항을 범죄피해자가 알 방법은, 법에 대한 지식이 높은 당사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통해 얻는 정보가 전부이다. 그런데 담당 경찰, 검사는 물론이고 선임된 변호사조차도 범죄피해자에게 법 조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범죄피해자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권이 있는지 그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¹⁸³⁾에 따라 2015. 4. 16.부터는 ‘피해자 미란다 원칙’¹⁸⁴⁾이라는,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고지를 제도적¹⁸⁴⁾으로 의무화하였고,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¹⁸⁵⁾(이하 ‘안내서’라 함)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권리 찾기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안내에 그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피해자 중 다수는 “안내서 종이 한 장 받은 것 외에 달리 설명을 들은 게 없다”라고 하거나, “검찰청사 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는 기본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전반적으로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형식적으로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안내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한국인들조차도 다시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파키스탄인 범죄피해자에게 영어로 된 안내서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¹⁸⁶⁾

이처럼 범죄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안내서가 단순히 범죄피해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정확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내용의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 4. 1.부터 법무부는 안내서에 적시된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산재 되어있고,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183) 대검찰청 대변인실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도입, 권리 고지 의무화”(2015. 4. 14. 배포).

184)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란,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권 거부 등 헌법상 권리를 고지해주는 ‘미란다 원칙’처럼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국가 제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85)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신뢰관계자와 동석,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재정신청,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재판진술, 비공개 심리 등) 2.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신변 보호, 인적사항기재 생략, 심리상담·치료 지원, 소송지원, 경제적 지원 등) 3. 기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가해자와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신청, 성폭력, 가정보호사건 등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 긴급복지지원 등)이 안내되어 있다.

186) 김 혁,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221-222면.

불편함이 있어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¹⁸⁷⁾를 실시하고 있다.¹⁸⁸⁾

그러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범죄 발생 건수 평균 약 160만 건¹⁸⁹⁾에 비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한 횟수는 평균 약 12만 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의 10%¹⁹⁰⁾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원스톱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완점이 반드시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포함하여 형사절차상 사건과 관련하여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선하여 제안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이후에 선택은 범죄피해자의 자율권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III. 수사상황의 충분한 설명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권의 보장에 관한 법 규정은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장이나 진술 등을 알 수 없고, 검사의 사건에 대한 의견 또한 알 수 없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법 규정에 따른 정보만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궁금증은 해결하는데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범

187)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란,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법무부 등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법무부 인권구조과 보도자료, 2022. 3. 31. 배포).

188) 법무부 인권구조과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2022. 3. 31. 배포).

189)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20.

190) 법무부 인권구조과 보도자료, 4면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실적】 (2022. 3. 31. 배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서도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의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수사상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¹⁹¹⁾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외는 수사와 관련된 가해자의 수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단계는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므로,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는 가해자(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좀 더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가령, 검사의 공제제기 후 증거제출 전 단계라면, 검사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표 5>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 신설 >	제8조의3(공소 제기 후 증거서류 제출 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 등) ① 검사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수사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수사의 결과. 2. 수사의 진행 방향. 3. 검사의 의견 등. ② 검사는 수사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가해자의 인권침해 및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항을 제한할 수 있다.

191)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절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통한 진술권 행사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통한 진술권 행사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제3항(기본이념), 동법 제8조 제1항(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¹⁹²⁾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행사는 본래, 형사절차시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공소 제기 이후의 절차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수사초기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경찰청의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에는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수사규칙」 제38조 제4항에는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 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한 사유’의 이유에 대하여 그 해석의 모호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떤 것이 방해행위이고, 어떤 것이 그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오롯이 수사담당자의 판단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사유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제한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수사담당자와 대면해서 진술한다는 것은 불안함과 초조함 등으로 인하여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변호사 같은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와 함께 동석하길 원하는 경우¹⁹³⁾가 많다. 그 때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제한받게 되면 범죄피해자의 진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담당자의 판단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인에 의한 기밀누설, 협박, 폭행” 같은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최대한 제한규정을 축소하여 범죄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I. 구속심사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검찰은 대검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와 제19조에서 알 수 있다. 제16조에서는 “검사는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범죄피해자가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고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제19조 제2항에서는 “공판 검사는 재판기일에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시를 ‘조치’란에 기재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미조치 사유’란에 간략히 기재한다.”라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

193)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에 의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검찰에 접수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 제19조의 지침 내용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진술권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라는 내용과 상반되는 지침 내용이다. 같은 지침안에서도 서로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담당 검사에게 추가 진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술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미국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전담 요원’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피해자 전담자를 두어, 검사는 피해자 전담자에게 추가 진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전담자의 승인을 받아서 제한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

III. 재판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진술권이 있긴 하나, 실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본인의 심정이나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의견 정도 진술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검사가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심정이나 고통, 상처, 손해 등을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⁹⁴⁾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인으로서의 재판 진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독립된 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 진술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규정이 꼭 필요하다. 즉 범죄피해자가 증인의 지위가 아닌 독립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바탕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¹⁹⁵⁾

그러므로 범죄피해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닌 독립된 지위로 인정하고, 직접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직권으로 범죄피해자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의견 진술

194)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124-125면.

195)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125-126면.

방식을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은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으로 격상하여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소결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충돌되는 부분은 가해자의 ‘기본권(인권, 프라이버시권 등)’ 보호였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즉, 정보권 보장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후 가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검찰의 대검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안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내용을 바로잡아 수정·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진술은 별도의 절차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을 받더라도 증인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나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증인에게는 공판절차과정을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질문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¹⁹⁶⁾ 따라서 현행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규칙이나 지침 등은 형사소송법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사

196) 천진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15면.

및 재판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참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권의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참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보권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즉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은 궁극적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형사절차 참여권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I. 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절차 구조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하여,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형사재판절차의 주체는 검사가 되고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참고인 정도로 여겨지는,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5항의 범죄피해자의 재판 진술권, 동법 제30조 국가구조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2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의 증인으로서 진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긴 하나,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등의 당사자 또는 준당사자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는 미흡한 상태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지위는 사건의 정보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처분과 범죄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정보제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국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 지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권의 문제도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범죄

피해자를 당사자 또는 준당사자로 취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으로 사인소추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인소추 제도는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사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 제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범죄피해자가 당사자로서 형사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증인신청 등 당사자로서 모든 권리행사(참여권, 진술권, 정보권 등)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앞서 국외의 범죄피해자 권리에서 보았던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있고, 독일의 경우는 국가소추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미한 범죄(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등)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사인소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직접적인 권리회복의 장점이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인소추 제도와 같은 직접 행위에 의한 방식은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으로 사인소추 제도를 바탕으로 한,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의 신설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판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독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여자의 범위는 직접적이고, 개인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면 누구든 참가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참가 방법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고,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 기소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참가자의 권한은 사인소추 제도와 같은 기록 열람·등사권¹⁹⁷⁾, 공판기일 등에 출

197) 사인소추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석권 및 전용 좌석 마련¹⁹⁸⁾, 증인신문권, 피고인 신문권, 의견 진술권이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절차에서 도입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한국형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안¹⁹⁹⁾

참가 당사자	① 범죄에 의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가족. ③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임받은 변호인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
참가 범위·방법	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 ② 참가 신청은 검사에게 신청. ③ 참가 허가는 법원에서 결정.
참가 권한	① 기록 열람·등사권. ② 공판기일 출석 및 전용 좌석 마련. ③ 증인신문권. ④ 피고인 신문권. ⑤ 의견 진술권.

단, 기록의 열람·등사권 경우는 피고인의 기본권(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가 도입된다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로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198) 피해자 참가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판기일이나 검증기일 등의 출석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당연히 피해자에게 그 기일이 통지되어야 한다(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114면).

199)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제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앞에서 논하였던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향상과 함께 재판의 참여권도 보장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보권의 보장범위도 넓어질 것이며, 그 효과로 앞에서 전술하였던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 개선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은 가해자를 적시에 검거 또는 처벌하는 것과 아울러 범죄피해의 보상체계 및 구제수단을 갖추어 실제 지원제도가 실행된다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자 또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면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범죄피해자에게 있어 ‘정보권’이란 신속한 피해회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게 부여된 다양한 권리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중의 하나다. 범죄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여러 권리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고, 형사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의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레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가능성이 있다.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법적·제도적·인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²⁰⁰⁾ 그 가운데 인적 요인의 경우 정보제공의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정보제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의 인식이 미흡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담당자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⁰¹⁾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주체는 검사이므로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참고인’ 정도로 여겨지고 있어 실제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 검사

200)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229면

201)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229면

를 비롯한 수사담당자들 사이에는 수사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의 실현은 형사사법기관 담당자와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정보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선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범죄 수사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담당자가 경찰이며, 그다음이 검사이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수준에 대해 ‘매우 잘 보장되고 있음’이 0.0%, ‘잘 보장되고 있음’이 23.4%, ‘보통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이 42.0%, ‘대체로 보장되지 않음’이 33.6%, ‘전혀 보장되지 않음’이 1.0%로 나타났다.²⁰²⁾ ‘보통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에 대한 응답과 ‘대체로 보장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을 합하면 75.6%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피해자 정보제공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제공함’이 0.0%, ‘잘 제공함’이 16.8%, ‘보통수준으로 제공함’이 60.7%, ‘잘 제공하지 않음’이 21.5%, ‘전혀 제공하지 않음’이 1.0%로 확인되었다.²⁰³⁾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보장 수준’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가운데 특히 정보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담당자인 경찰이나 검사에게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신임 경찰 또는 검사에서부터 재직 경찰 또는 검사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에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정보제공의 시기와 방법,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기

202)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표3>.

203)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표5>.

위한 방식 등에 관련한 철저한 교육의 시행을 제안한다. UN Declaration 제16조, EU의 Victim's Directive 제25조가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자 정보권 교육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²⁰⁴⁾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면, 우선 교육의 형태와 관련하여, 재직기간별·근무부서별·연령별·성별 등으로 특성이 다른 각 집단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근무 환경적 특성 및 인구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빚어질 수 있는 오해와 편견 및 고정관념 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직무교육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 관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의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안한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에 강의식 방법보다는 참여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동안의 강의식 교육방법은 수사 담당자에게는 ‘형식적인’,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의식 교육방법 이외의 참여식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는 수사하고,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인식만 높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 자신도 현행 헌법과 법령 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잘 인식하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향유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식을 사전에 갖추고 있다면 유사시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²⁰⁵⁾ 이는 직·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본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

204) John P.J. Dussich & Kieran G. “Mundy,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ittute, 2008, 186면 ; Victim's Directive Article(제25조)(<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유럽연합 공식 웹사이트).

205)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권보호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2017, 35면.

민에게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²⁰⁶⁾

따라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에 대한 교육이 시사·교양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가령,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학 및 지역별 평생교육 기관에서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인 일반 시민에게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현행 국내법과 국내 수사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206)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권보호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35면

제6장 결론

지금까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정보권(제2장),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제공 현황 및 문제점(제3장), 국외의 범죄피해자 정책 및 정보권에 대한 검토(4장), 범죄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제5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정보권에 관한 규정 및 정책으로 헌법에서는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현행 국내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사·재판·형 집행단계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인, 「경찰의 범죄 수사규칙」 제203조 등 규정, 검찰의 「형사소송법」 제259조 등 규정, 법원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여 범죄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에 대한 문제점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고, 크게 ①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문제, ② 사건의 통지 문제, ③ 사건의 피해자 배제문제가 대표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UN의 ‘Declaration’과 EU의 ‘Framework Decision’, ‘Victim’s Directive’ 살펴보았다. ‘UN 피해자선언’은 EU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고, FD나 VD는 ‘UN 피해자선언’이 가진 법적 취약점의 극복을 위한 조치이지만 유럽연합의 회원국만을 상대로 시행되는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제적 선언이나 규약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선진적인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대륙법계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와 영미법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미국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규정은 전담요원제도가 있고, 독일은 사인소추와 부대사소 제도, 프랑스도 사인 소추권과 형사화해제도, 영국은 범죄피해보상제도 및 범죄피해자 개인 진술(Victim Personal Statement)절차, 미국은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 유죄협상제도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영미법계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대륙법계와 비교해 높게 인정받고 있으므로, 정보권 또한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행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 범위의 확대, 특히 대검예규「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침’을 동 지침 제3조에도 준용하여 공소 제기 전 사건이나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② 사건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제도 및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권의 존재를 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③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권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형사절차시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이 실제로는 공소 제기 이후의 절차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① 증인신문과 범죄피해자 진술은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여 최후진술 또는 의견 진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② 검찰과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피해자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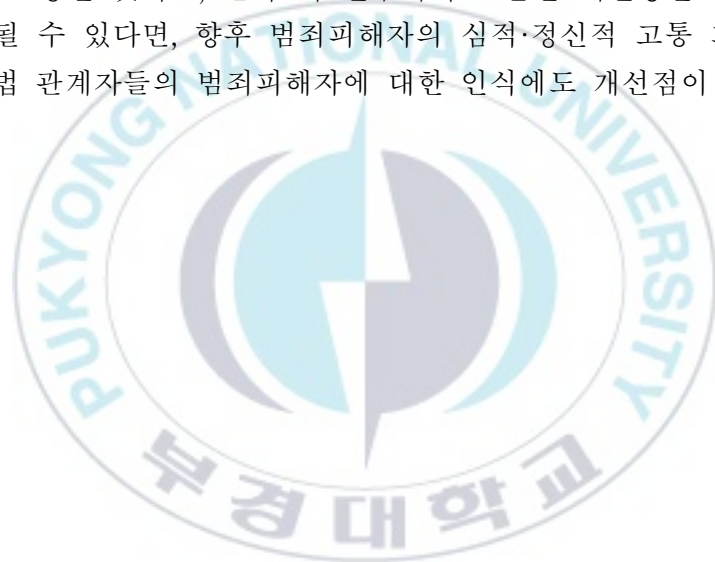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 또는 준당사자로 취급하는 제도 마련, ② 범죄피해자의 소송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독립된 권리의 지위로 참여가 가능한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의 신설을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범죄피해자에게 정보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선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인식문제의 개선방안으로 ① 경찰 또는 검사의 직무교육이나 전문화 교육에 정보권 보장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정보권 보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② 수사, 재판,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③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사·교양의 수준에서 범죄피해자 정보권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권 보장’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범죄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과제는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일 것이고, 만약 이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향후 범죄피해자의 심적·정신적 고통 회복과 더불어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에도 개선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김경렬·전병욱·도중진,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국, 2009.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이윤호, 『피해자학연구』, 집문당, 2007.
박상식·이창호,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전수영, 『범죄피해자보호방안』, 한국학술정보, 2009.
최영인·염건령,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백산출판사, 2005.
허경미, 『피해자학』, 박영사, 2011.

2. 학위논문

- 김길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대학원, 2017.
김현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백영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9.
서명희,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양경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

명대학교 대학원, 2008.

정연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7.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4.

3. 학술논문

김봉수,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 피해자학회, 2008.

김용세·윤민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제재시스템 개혁”, 『한국 형사 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정암 정성진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2010.

김잔디, “범죄피해자 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1.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0권 제
3호, 2015.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국제규범들과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학
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2017.

김재민, “범죄피해자 권리의 실효적 보장”,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7.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권
보호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2017.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2017.

김재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피해자학연구

- 제19권 제1호, 2011.
- 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1.
- 김택수,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2009.
- 김한수, “영국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 김 혁,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보호관찰 제17권 제1호, 2017.
- 김 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범·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2020.
- 김 혁,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
- 김 혁,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 공정식,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제45호, 2015.
- 남상관,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소고-노스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I) 제25집, 대검찰청, 2010.
- 노상욱·박종렬,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제7권 제4호, 2016.
- 도중진, “일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71호, 2002.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2.
-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 류병관, “미국 소년사범에 있어 범죄피해자권리 등장에 따른 논의”, 소년보호연구 제17호, 2011.
- 박미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호, 2006.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2008.

박호현·김종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범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호, 2018.

손병현, “현행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손병현,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4.

소영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법연구 제1권 제1호, 2015.

안성수, “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강화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 2008.

이만중,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4.

이재영·김연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6.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2009.

윤현석,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2.

양경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

장규원,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84호), 2010.

장규원·윤현석,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참여방안 연구”,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제4권 제2호, 2012.

정주호,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확대방안”, 가천

법학 제10권 제4호, 2017.

조희경, “프랑스의 2011 개정된 중재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차용석,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일반론”, 법학연구 제27집, 2007.

천진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한영선, “정의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UN협약’ 초안: 회복적 사법 조항과 관련하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

황순평,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의 피해자통지제도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7호), 2008.

4. 정책연구보고서

강성구·박광민·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김정연,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김정혜,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 및 외국의 관련 제도” 법무부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 2012.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이승현·박성훈,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동향 연구보고서, 2004.

II. 국외문헌

1. 영미문헌

Stephen Schafer, *The Victim and His Criminal: A Study in Functional Responsibi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8.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9
- Eduardo Vetere & Pedro David(Eds.),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 Festschrift in honourofIreneMellup, 2005.
- Marc S. Groenhuije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cy in relation to victims of crim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Vol 20(1), 2014.
- John P.J. Dussich & Kieran G. “*Mundy,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ittute, 2008.

2. 일본문헌

- 瀬川晃, イギリス刑事法の現代的展開, 成文堂, 1995.
- 太田澹也, “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1163號, 有斐閣, 1999.

Ⅲ.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검찰청] <https://www.spo.go.kr>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전라북도 경찰청] <https://www.jbpolice.go.kr>
- [국가정책연구포털] <https://www.nkis.re.kr:4445>
- [외교부] <https://www.mofa.go.kr>
- [유엔공식웹사이트] <https://www.ohchr.org>
- [유럽연합공식웹사이트] <https://eur-lex.europa.eu>
- [미국 법무부] <https://www.justice.gov>
- [미네소타 인권도서관] <http://hrlibrary.umn.edu>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Jung-hwan Park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and ways to improve them. Existing studies to protec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rom the problems of rights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it is still not effectively applied in the field. In particular, amo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the 'information rights' are a very important part to be dealt with bot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rime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judicial institution on handling criminal cases. In addition, since the 'information rights' are the most basic right among various rights, if these rights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 may be limitations in securing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etc.), so we need to be more careful.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as a way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real worl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basis and support policies, and sought concrete and feasibl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suggested improvement plan, a follow-up study was suggested.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current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can be found in ① application for perusal and copying of case records, ② notification of the case, and ③ exclusion of victims of the case. As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regulations」 to improve such problem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s for perusal and copying of case records, etc., ② obligatory notification of the 'right to know' of the case, ③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was presented. As 「Measures for Improving Rights」, it was suggested that ① the interrogation of witnesses and the statement of the victim of a crime should be separated into separate procedures, and ② the guidelines related to the statement of opinion of the crime victim should be strengthened. As 「Measures to improve policy」, ① Improvement of the Particip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and ②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articipation in trial proceedings for crime victims were proposed. Lastly, as 「a way to improve awareness」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① open courses related to information right security and nurture information right education experts, ② improve the awareness of subjects in charge of trial procedures and support administration, ③ a plan to activate education on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for general citizens was proposed.

Keyword : Crime Victims,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 Rights, Information Provision,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Constitution, Criminal Procedure Code[Act]